



Q. 피고인은 2008. 3. 12.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, 2017. 2. 2. 혈중알콜농도 0.125%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으로 단속 되었습니다. 피고인은 2017. 2. 27. 혈 중알콜농도 0.177%의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단속되어 2017. 2. 2.자 음주운전 행위와 동시에 기소가 이루어져 함께 재판을 받게 되

었습니다. 이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'제44조 제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'의 의미에 대하여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면 족한 것인지 그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어 야 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.

A.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 하고,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(이하 '이 사건 조항'이라 합니다)는 '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'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함으로써 단순음주운전에 대하여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.

이 사건 조항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 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례 에서 유죄의 판결은 단 1번만 있었으므 로 사례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 다. 그러나 만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 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면 족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조항은 적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.

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 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

하고 있고.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 지 않은데,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 적 속성,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 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 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 벌을 강화하고,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 민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 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,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 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조항 중 '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'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 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 석해야 하고,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 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 해 엄격한 판단을 하였습니다.

스팸 보관함에 저장된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?



Q.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초 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 락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불 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 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. 피고인은 피 해자가 스팸 처리하여 받아보지도 않 은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불안감을 유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 였습니다.

A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고 이를 이 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서 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 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 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· 문언 · 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 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 고 있습니다.

'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 는 행위'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 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, 표현방법 과 그 의미,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, 문 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, 그 전후의 사 정,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(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)

최근 대법원은 위 사례와 같은 사건에 서 '도달하게 한다'는 것은 '상대방이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'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상대방 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 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 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,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 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 고.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(대법원 2018, 11, 15,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).

따라서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 라도.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 므로. 피해자에게 '도달'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.

(자료/법원사람들)